

안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9-134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3. 3. .

제출자 : 안산시장

제안이유

- 상위법령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 일부개정 사항임.
-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)를 설치하고, 그 구성 근거를 마련하여
-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 진작과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내용에 관한 사항 정비함(안 제8조)
-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정비함(안 제11조)
- 위원회 구성 및 임기를 신설함(안 제11조의2)
- 위원회 운영을 신설함(안 제11조의3)
- 위원회 위원의 해촉을 신설함(안 제11조의4)
- 위원회 회의수당을 신설함(안 제11조의5)

개정조례안 : 붙임1

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2

관계법령발췌서 : 붙임3

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사항 없음

- 예산수반사항 : 붙임4
- 사전예고(결과) : 붙임5
 - 입법예고 : 2023. 1. 26. ~ 2023. 2. 15. (20일간)
 - 예고결과 : 의견 3건(반영 1, 미반영 2)
- 기타 참고사항
 - 현행조례 : 붙임6
 - 방침결정문 : 붙임7

안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안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 제목 “(실태조사)”를 “(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시장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,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에 관한 조사(이하 “실태조사”라 한다)가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(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 제2조 각 호의 법인 등(이하 “사회복지법인 등”이라 한다)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제11조의 제목 “(위원회 설치)”를 “(위원회 설치 및 기능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사회복지사등처우및지위향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”를 “안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수행한다”를 “자문 또는 심의한다”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중 “계획의 수립 및 시행”을 “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실태조사”를 “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

· 시행” 으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처우개선 등 사업” 을 “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” 으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” 을 “처우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” 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.

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의2(위원회 구성 및 임기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.

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
1.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.

2.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

 가.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

 나.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

 다.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시민단체

3.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

4.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

④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 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제11조의4에 따른 결원의 발생으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11조의3(위원회 운영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로 소집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업무담당 과

장이 된다.

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11조의4(위원의 해촉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

2. 품위 손상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11조의5(회의수당 등) 회의 등에 출석한 위원·전문가·관계인 등에게는 「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복지정책과
입 안 자	실·과장	복지정책과장
	직위·성명	이 경숙
	담당·팀장	지역복지팀장
	직위·성명	박 하연
	담당자 성명·전화	배 은형 (행정 3417)

< 불임 2 >

신·구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(실태조사)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(이하 “실태조사”라 한다)를 할 수 있다.</p>	<p>제8조(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) ① 시장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,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에 관한 조사(이하 “실태조사”라 한다)가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(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 제2조 각 호의 법인 등(이하 “사회복지법인 등”이라 한다)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</p>
<p>②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는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5조의3에 따른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.</p>	<p>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기관 등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, 요청을 받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기관 등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</p>
<p>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기관 등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, 요청을 받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기관 등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</p>	<p>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</p>
<p>④ (생략)</p>	<p>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1조(위원회 설치)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자</p>	<p>제11조(위원회 설치 및 기능) ① --- ----- -----</p>

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원
향상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「안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」에 따른 안산시 지역사회복지 협의체가 그 역할을 대행한다.

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.

1.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
2.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
3.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원 향상에 필요한 사항

④ 위원회의 구성, 위원의 해촉, 회의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「안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」를 준용한다.

〈신설〉

----- 안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〈삭제〉

③ -----

--- 자문 또는 심의한다.

1.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---
2.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· 시행-----
3.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---
4. ----- 처우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-----

〈삭제〉

제11조의2(위원회 구성 및 임기) ①

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.

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
1.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

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.

2.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

가.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

나.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

다.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시민단체

3.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

4.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

④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제11조의4에 따른 결원의 발생으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<신 설>

제11조의3(위원회 운영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로 소집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.

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

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
이 정한다.

<신 설>

제11조의4(위원의 해촉) 시장은 다음
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
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
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
2. 품위 손상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
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
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<신 설>

제11조의5(회의수당 등) 회의 등에 출

석한 위원 · 전문가 · 관계인 등에게
는 「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
운영에 관한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
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
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
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
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안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 안 번 호	9-134
------------	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3년 3월 28일
제 안 자 :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

□ 수정이유

- 상위법에 맞춰 조문을 수정하고 불필요한 단서를 삭제하여 조문을 간결하게 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“인건비에 관한 기준”을 “인건비 기준의 준수율 등”으로 한다.
(안 제8조제1항)
- 단서를 삭제한다.(안 제11조의5)

안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안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인건비에 관한 기준” 을 “인건비 기준의 준수율 등” 으로 한다.

제11조의5 단서를 삭제한다.

수정안 조문대비표